사천시공설해수욕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1. 3. 12

나. 제 출 자 : 사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3. 12(의안 제8호)

라. 심사일자 : 제53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1. 3. 23)

2. 제안이유

공설해수욕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수욕장 구역안에 설치하는 시설(주차장 및 샤워장)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

3. 주요골자

가. 공설해수욕장의 명칭 및 위치 규정(안 제1조의 2)

나. 시설물의 종류를 샤워장과 주차장으로 하고 현재 설치된 시설물이 아닌 휴게소, 도선장 또는 선착장을 삭제함(안 제2조)

다. 종전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조례상에 직접 규정하였으나 개정 조례는 사용료의 상한액을 조례상에 규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사용료의 현실화와 조례의 탄력성을 기함(안 제3조제2항 , 별지)

4. 법적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및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5.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안은 해수욕장 설치 근거가 1999년에 폐지된 사천시공설해수욕장조례의 폐지로 없어짐에 따라 설치 근거없이 해수욕장을 운용해온 불합리를 해소하고

○.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 제3조 2항과 같이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실제 징수 금액은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 이 규정은 조례에서 과도하게 시장에게 사용료 책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회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조례안 제3조 사용료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별표의 사용료 규정중 1992년도에 책정되어 인상하지 못한 주차요금을 현행 사천시주차장조례상 요금과 균형을 맞추고, 샤워장 사용료는 인근 상가의 협정 요금과 균형을 맞추어서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은 동 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전문위원 수정의견에서

소형차 2시간까지를 1,000 → 2,000

대형차 2시간까지를 2,000 → 3,000로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첨부 : 수정안 1부

< 수 정 안 >

원 안	수 정 안
제3조(사용료)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천시에 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3조(사용료)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표 구분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삭제)
제4조(위탁관리)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케 하였을 경우 위탁관리기간은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하고 수탁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정하는 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위탁관리)① (생략) ②…… …… …… ……제3조에 규정한…… …….

(원안)

[별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상한

시 설 별	구 분	기 준	상 한 액(원)
샤 워 장	1. 대인	1회	2,000
	2. 소인	1회	1,500
주 차 장	1. 이륜차	1일	800
	2. 소형차	1일	4,000
	3. 대형차	1일	6,000

- 비 고 -

1. 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 인 : 13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소 인 : 13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소형차 :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4톤미만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대형차 : 소형차 및 이륜차 이외의 전 차종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수정안)

[별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요율표

시 설 별	구 분	기 준	요액(원)
샤 워 장	1. 대인	1회	1,000
	2. 소인	1회	800
주 차 장	1. 이륜차	2시간까지	300
		1일	500
	2. 소형차	2시간까지	2,000
		1일	3,000
	3. 대형차	2시간까지	3,000
		1일	4,000

- 비 고 -

1. 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 인 : 13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 ○소 인 : 13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형차 :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4톤미만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대형차 : 소형차 및 이륜차 이외의 전 차종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